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727
결재일자	2015.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의회협력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이지영	서경택	이준기	04/13 손정수
협 조			



제2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

2015. 4.



행정지원과

의회협력팀

제2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

I. 개 요

주요일정

- 본 회 의 - 제1차 : 2015. 03. 23(월) 개회식
 - 제2차 : 2015. 03. 31(화) 안건처리 및 산회(폐회)

- 상임위원회 일정 : 2015. 03. 24(화) ~ 03. 30(월)【7일간】

안 건 - 총 8건

- 구 청 : 3 건 (조례안 3건)
- 의원발의 : 5 건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II. 안건 처리결과 현황(제7대)

제233회 상정안건현황

구 분	계		상정안건		의원발의		비 고
	제233회	누 계	제233회	누 계	제233회	누 계	
운 영 위 원회	-	3	-	-	-	3	
보건복지위원회	3	10	-	4	3	6	
도시건설위원회	3	17	1	13	2	4	
행정기획위원회	2	25	2	24	-	1	
계	8	55	3	41	5	14	

□ 위원회별 처리현황

구 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부결	
	제233회	누 계	제233회	누 계	제233회	누 계	제233회	누 계
운영위원회	-	3	-	3	-	-	-	-
보건복지위원회	3	10	2	8	1	2	-	-
도시건설위원회	4	17	1	12	3	5	-	-
행정기획위원회	2	25	2	19	-	6	-	-
계	9	55	5	42	4	13	-	-

※ 제232회 도시건설위원회 보류안건 수정가결 처리

□ 본 회의 처리현황

구 분		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비 고
		제232회	누 계	제232회	누 계	제232회	누 계	
조 례	제 정	3	10	1	7	2	3	
	개정(폐지)	6	22	4	15	1	6	
의견(동의)청취		-	13	-	12	-	1	
예·결산(승인)안		-	3	-	1	-	2	
기타(공유재산, 결의안 등)		-	7	-	7	1	1	
계		9	55	5	42	4	13	

Ⅲ. 처리내용

■ 상정안건

○ 총 3건 (조례안 3건)

상정안건(주요내용)	주관과	위원회명
<p>◇ 도시건설위원회(1건)</p> <p>1.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종전 도시농업활성화 주요사항을「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도시농업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농업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p>	<p>공원녹지과 의안번호: 57</p>	<p>원안가결</p>
<p>◇ 행정기획위원회(2건)</p> <p>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취약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통합방위 대비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인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p>	<p>행정지원과 의안번호: 58</p>	<p>원안가결</p>
<p>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서울시 洞 마을복지센터 1단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7.1자 전동 시행예정인 마을복지센터 시범사업 운영을 위하여, 우리구 해당직렬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p>	<p>행정지원과 의안번호: 59</p>	<p>원안가결</p>

■ 의원발의

○ 총 5건 (조례안 4건, 건의안 1건)

의원발의(주요내용)	주관과	처리결과
◇ 보건복지위원회(3건)		
<p>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진선아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 항목에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p>교육청소년과</p> <p>의안번호: 60</p>	<p>수정가결</p>
<p>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 오중균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고,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판매대등 선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함. 	<p>어르신복지과</p> <p>의안번호: 61</p>	<p>원안가결</p>
<p>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 김춘례 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p>건강관리과</p> <p>의안번호: 62</p>	<p>원안가결</p>
◇ 도시건설위원회(2건)		
<p>1.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p> <p>- 박학동 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p>교통행정과</p> <p>의안번호: 63</p>	<p>수정가결</p>

의원발의(주요내용)	주관과	처리결과
<p>2.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하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 - 목소영 의원</p> <p>○ 스카이하파트(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외 9필지 5,591㎡)는 건축한지 45여년이 지난 매우 위험한 상태로 대피 명령이 내려진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주 하지 못하고 잔류중인 16세대(31명)는 여전히 생명과 안전을 위협 받으며 거주하고 있어 방안마련이 시급하여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건의하고자 함.</p>	<p>주택관리과 의안번호: 62</p>	<p>수정가결</p>
<p>3. (제232회 보류안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목소영 의원</p> <p>- 2013.12.24.「주택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p> <p>-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p>	<p>주택관리과 의안번호: 52</p>	<p>수정가결</p>

■ 수정가결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청소년과

○ 수정이유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2012. 8. 5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문구를 제1조중 “제16조제1항제11호” 를 “제52조제1항제8호” 로, 제2조제1호중 “제2조제1호” 를 “제3조제1호” 로,

제2조제2호중 “제16조제1항제11호” 를 “제52조제1항제8호” 로,
제4조중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를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로 수정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건강정책과

○ 수정이유

-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조문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5조의 조문 중 “필요시” 를 삭제함.

3.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하파트 해결 촉구 건의안 - 주택관리과

○ 수정이유

- 건의안이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함.

○ 주요내용

- 건의안 첫 번째 단락의 처음과 중간부분을 수정함.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주택관리과

○ 수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한 감사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 제82조각 호에 정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제외대상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외대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감사요청 규정을 법률과 일관성 있게 수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강행규정인 “제외한다” 를 “제외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변경함. (제2조제2항)
- 법률과 일관성을 갖기 위해 “구청장은 감사요청을 처리(감사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때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를 “구청장은 감사요청을 각하 처리하는 경우 대표자가 원할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로 변경함. (제3조제2항)
- “주소” 를 “동·호수” 로 변경함. (별지 제2호 서식)

IV. 기타사항

■ 5분 자유발언

○ 목소영의원(동네 서점 관련)

☞ 책읽는 성북, 성북구의 다양한 도서문화 정책의 파트너로서 동네서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